



#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## - 건물 -

고유번호 1701-1996-360811



[건물]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54-4

【 표 제 부 】 ( 건물의 표시 )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2)	1981년7월1일	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54-4	부록조 세멘외층 평가건 주택 건평 29평 4작	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1월 09일 전산이기
2		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54-4 [도로명주소]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877-5	부록조 세멘외층 평가건 주택 건평 29평 4작	도로명주소 2012년9월18일 등기
3	2017년10월25일	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54-4 [도로명주소]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877-5	블럭조 와가, 스테트지붕 1층 소매점, 일반음식점, 점포, 주택 1층 31.5㎡ 1층 24㎡ 1층 24㎡ 1층 16.5㎡	건물표시변경
4	2017년10월27일	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54-4 [도로명주소]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877-5	블럭조 와가, 스테트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1층 31.5㎡ 1층 24㎡ 1층 24㎡ 1층 16.5㎡	신청착오

【 갑 구 】 ( 소유권에 관한 사항 )				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1)	소유권보존	1979년12월26일 제34871호		소유자 구득봉 <del>경산군 고산면 연호동 54-4</del>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1월 09일 전산이기
1-1	1번등기명의인표시 경정	2011년1월18일 제2409호	1979년12월26일 신청착오	<del>구득봉의 주소 경상북도 경산군 고산면 연호동 54</del>
1-2	1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	2011년1월18일 제2410호	1981년5월15일 전거	<del>구득봉의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54-4</del>
1-3	1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	2014년1월27일 제18322호	2011년10월31일 도로명주소	구득봉의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877-5 (연호동)
2	소유권이전	2025년5월13일 제2292241호	2023년6월11일 상속	공유자 지분 2분의 1 구영옥 621007-*****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877-5 (연호동) 지분 2분의 1 구원모 690907-***** 경상북도 경산시 동지로10길 8-4, 201호(조영동)
				대위자 박민준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압량시장길 7, 301호 대위원인 2025년5월1일 대구지방법원의 2025타경802 강제경매사건 보정명령에 의한 대위상속등기
3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5월20일 제2432951호	2025년5월19일 대구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 정(2025타경802 )	채권자 박민준 970730-*****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압량시장길 7, 301호 (부적리)
4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6월26일	2025년6월26일	채권자

[건물]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54-4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	제3254338호	대구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(2025타경897)	정성권 620928-*****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74, 101동 702호 (신교동, 경산은하맨션아파트) 박화연 720427-*****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압량시장길 7, 206호(부적리)
5	2번구영육지분압류	2025년7월2일 제3404802호	2025년7월1일 압류(세무2과-005498)	권리자 수성구(대구광역시) 2216

**【 을 구 】** (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1)	<del>근저당권설정</del>	<del>1979년12월26일 제34872호</del>	<del>1979년12월20일 설정계약</del>	<del>채권최고액 금사백만원정 채무자 구득봉 경산군 고산면 연호동 54-4 근저당권자 고산단위농업협동조합 경산군 고산면 시지동 133-3 공동담보 토등제195호</del>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1월 09일 전산이기
2	1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	2011년1월18일 제2411호	2011년1월18일 해지	
3	<del>근저당권설정</del>	<del>2011년1월18일 제2412호</del>	<del>2011년1월18일 설정계약</del>	<del>채권최고액 금208,000,000원 채무자 구득봉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54-4 근저당권자 고산농업협동조합 170136-0000743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133-3 공동담보 토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54-4 토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54-2</del>
4	3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	2014년1월27일 제18321호	2014년1월27일 해지	
5	<del>근저당권설정</del>	<del>2014년1월27일 제18323호</del>	<del>2014년1월27일 설정계약</del>	<del>채권최고액 금260,000,000원 채무자 구원모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47길 33-13, 302호</del>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			<del>(중방동, 광진빌라)</del> <del>근저당권자 달구벌신용협동조합</del> <del>170141-0000867</del> <del>대구광역시 수성구 권일로 173(매호동)</del> <del>공동담보 토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54-4</del> <del>토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54-2</del>
6	근저당권설정	2017년12월27일 <del>제195254호</del>	2017년12월27일 설정계약	<del>채권최고액 금120,000,000원</del> <del>채무자 구원모</del> <del>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61길 28-8,</del> <del>505호(조영동)</del> <del>근저당권자 달구벌신용협동조합</del> <del>170141-0000867</del> <del>대구광역시 수성구 권일로 173(매호동)</del> <del>공동담보 토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54-4</del> <del>토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54-2</del>
7	6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	2025년2월3일 제65642호	2025년2월3일 해지	열람용
8	5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	2025년2월3일 제65655호	2025년2월3일 해지	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

\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\* 기록사항 없는 gaps, blanks are marked as 'no record'.

\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\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# 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## [ 주의 사항 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701-1996-360811

[건물]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54-4

### 1. 소유지분현황 ( 갑구 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구영욱 (공유자)	621007-*****	2분의 1	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877-5 (연호동)	2
구원모 (공유자)	690907-*****	2분의 1	경상북도 경산시 동지로10길 8-4, 201호(조영동)	2

### 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 갑구 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3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5월20일 제2432951호	채권자 박민준	구영욱 등
4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6월26일 제3254338호	채권자 정성권의 1명	구영욱 등
5	압류	2025년7월2일 제3404802호	권리자 수성구(대구광역시)	구영욱

### 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 을구 )

- 기록사항 없음

#### [ 참 고 사 항 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